

[별표 6]

누수 하자 조사방법(제48조제2항 관련)

구 분	조사내용
시공상태확인	-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일치하는지, 시공이 잘못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. - 방수층의 손상 및 파손 여부, 이물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. - 창호의 수밀성은 창호가 밀실하게 닫혀 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. - 창호의 배수성은 배수 홀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한다. - 창호 내외부 둘레의 실링(코킹) 재료의 결함 및 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한다.
사용상·유지관리상의 부적절 여부	- 중량물의 설치 이동 및 추가공사 흔적이 있는 경우 사용검사 이후 입주자 주관으로 추가공사 시행 여부를 조사 확인한다. - 방수부위가 당초 예정된 용도 및 기능 이외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. -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(드레인 막힘에 의한 넘침, 비방수부위 물청소, 우천 시 창호개방, 파손 등)을 확인한다.
창호부위	- 창호에 면한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.